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78
----------	------------

제안일자 : 2026. 3. 4.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동주택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지 원) ① 시장은 「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 비 설치 및 기술기 준」 제14조의2에 따 라 공동주택 입주민 이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하여 세대 간 네트 워크 분리를 수행하 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 산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지능 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 설치된 공동주택 으로 한다.</p>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 능형 홈네트워크 설 비를 설치하거나 교 체하는 경우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 크 설비 설치 및 기 술기준」 제14조의2 에 따라 세대 간 네 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③ 제1항에 따른 예
산의 지원범위는 민
간주택의 경우 사업
비의 70퍼센트 이하
로 하되 최대 3억원
을 초과할 수 없으
며,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예
산의 지원범위와 절
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다.

<삭 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p>